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 1189 호 2019. 8. 14.(수)

| |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|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7호[공유수면 점·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]..... 1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917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]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921호[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]..... 6

| | |
|--------|--|
| 안 내 |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 |
|--------|--|

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| | | | | | | | |
| 람 | | | | | | | | |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-187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14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□ 고시내역

| 허가 년월일 | 허가 번호 | 피허가자 | | 점용장소 | 면적 (m ²) | 허가기간 | 점용목적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| 주 소 | 성 명 | | | | | |
| 2019. 8.8. | 2019 -13 | 울산광역시 복구 정자1길 111 | 박상준 | 울산광역시 복구 정자1길 111 일원 | 60 | 2019. 7. 8. ~ 2019. 8. 21 | 수상레저사 업을 위한 계류장 설치 | 기간 변경 |
| | | | | | | 변경후 | | |
| | | | | | | 2019. 7. 8. ~ 2019. 8. 8. | | |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-917호

「울산광역시 복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14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
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, 복구청 기획홍보실
- 2) 전화번호 : 052)241-7104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2. 기타사항

- 가. 예고기간 : 2019.8.14.(수) ~ 9.3.(화)(20일간)
- 나. 예고방법 : 공보,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다. 개정내용 :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

붙임 1.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울산광역시 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·조정
2.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
3. 중장기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협의
4.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의 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울산광역시 북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3.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
4. 구 소속 공무원
5.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2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.

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분과협의회)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협의회의 의결로써 협의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

제10조(의견의 청취 등)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,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록) 구청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- 921호

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

「하수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·화봉동 일원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14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사용개시일 : 공보게재 익일부터 개시
2. 공공하수도의 위치 : 북구 송정동·화봉동 일원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
3.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(변경없음)

| 하 수 처리장명 | 설계용량 (단위: m ³ /일) | 설 계 유 입 수 질(단위: mg/ℓ)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|
| | | BOD | COD | SS | T-N | T-P |
|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| 100,000 | 157.2 | 160.2 | 179.9 | 34.2 | 5.4 |

4. 하수처리면적 : 1.437km²
5.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

| 구 분 | 합류식 | 분류식 |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우수관거 | 오수관거 |
| 관거연장(m) | 해당 없음 | 36,644m | 18,446m |

6. 공람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
7. 하수도 도면 및 하수도 배수설비 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,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하수계(052-241-788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